

[서식 예]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(대중음식점)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◎◎빌딩 3층에 ☆☆맥주라는 상호로 경양식 호프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○○. ○. ○.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○. ○. 자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위 영업정치처분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생계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.
- 3. 관계법령



식품위생법 제44조 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

-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청소년(이하 이 항에서 "청소년"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
 - 2.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5호가목3)에 따른 청소년출입·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
 - 3.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5호나목3)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
 - 4. 청소년에게 주류(酒類)를 제공하는 행위

같은 법 제75조(허가취소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(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명할 수 있다.

13. 제44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

4. 이 사건의 경위

원고는 사건 당일 소외 홍□□과 정□□이 다른 남자 1사람 및 여자 3사람과 같이 위 음식점에서 자신들이 대학생인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주1병과 호프 6잔,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는 그 다음날 02:00경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려고 하자 원고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게 되어 112로 신고를 하였습니다.

원고는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위반경력이 전혀 없습니다.

5. 결론

그러므로 원고가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속이고 들어왔으며 원고가 112에 신고를 해서 본 건이 문제화되었다는 점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

입 증 서 류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1. 갑 제5호증

1. 갑 제6호증

1. 갑 제7호증

영업정지처분서

확인서

사건발생보고서

진술서

탄원서

주민등록증사본

영업허가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납부서

각 1부

1부

1부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,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